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3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16.12.30.)개정에 따라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규정 일부 삭제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삭제사항 반영(안 별표)

-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 수산물가공업 신고

나.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 (현행)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추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22.~4.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란,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란,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2)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별표 제57호 삭제
(4)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별표 제58호 삭제
(5)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별표 제59호 삭제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5)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6)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7)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8)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9)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0)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1)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별표 제104호 삭제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	
(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u>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u>)	1건	40,000	별표 제138호 개정
(다)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u>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u>)	1건	20,000	별표 제137호 개정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1건	40,000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u>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u>)	1건	10,000	별표 제133호 개정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u>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u>)	1건	10,000	별표 제134호 개정